

정보통신연구소 운영규정 신규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정보통신연구소 운영규정	정보통신연구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세칙 은 정보통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2조(명칭) 연구소의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연구소(POSTECH Information Research Laboratories, PIRL)"라 한다.	기관의 명칭 명시
(신설)	제3조(설립목적)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정보통신분야를 선도하는 첨단연구를 수행하여 정예인력을 양성하고 공동연구를 통한 산·학·연 협동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기관의 설립 목적 명시
제2조(조직 및 기능) ①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제4조(직제) ①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며, 필요시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제1회 이사회 의결사항 반영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소장 유고시 업무대행은 운영위원이 수행한다.	② 운영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소장 유고시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조교수 이상의 교원' 삭제 (이사회 승인사항 반영) 2. 당연사항 삭제
③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소에는 컴퓨터, 통신, 제어 등의 정보통신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을 두며, 각 연구실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좌동)	
제3조(연구소원) ① 연구소원은 전임연구원, 계약직연구원, 직원으로 구분한다.	③ 연구소원은 직원, 전임연구원, 계약직연구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와 통합
② (삭제)	(삭제)	1. 당연사항 삭제 2. 준용에 관한 사항은 조에서 정함
③ 연구원 및 임시직의 임용은 예산 및 정원 범위 내에서 총장이 시행한다. 다만, 총장은 채용에 관한 일부사항을 소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직원의 임용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이를 시행한다.		

<p>⑤ 연구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정한다.</p>		
<p>제4조(업무처리기준)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한 업무중에서 다음 각 호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시 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 결산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관련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인사 및 지침설정에 관한 사항 5. 채무부담 발생 원인행위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운영에 영향을 주는 사항 <p>② (삭제)</p> <p>③ 연구소 업무 전결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u>업무전결규정에</u> 준하여 별도로 정한다.</p>	<p>(제7조로 이동)</p>	<p>(현행유지)</p>
<p>제5조(예산 및 회계) ① 예산은 연구소의 사업수입, 교육수입, 기타수입으로 한다.</p> <p>② 연구소의 예산 및 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년도말 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한다.</p> <p>③ 재정자립화 및 특별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도말 잉여금중 일부를 특별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기금조성을 할 수 있다.</p>	<p>제5조(예산 및 회계) ① 예산은 연구소의 사업수입, 교육수입, 기타수입으로 편성된다.</p> <p>② ~ ③ (현행유지)</p>	
<p>제6조(연구기획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획위원회를 둔다.</p> <p>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의 구성은 당연직 운영위원과 소장이 임명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하며, 5인 이상 9인 이내로 한다.</p>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p> <p>④ 연구기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소 장단기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주요사항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관련 제규정, 운영제도 및 주요방침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p>(좌동)</p>	

<p>5. 정보통신대학원과의 공동운영과 관련하여 연구소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p> <p>6. 연구원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p> <p>7. 연구원의 채용, 승진,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p> <p>8.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p>		
<p>(제4조 이동)</p>	<p>제7조(업무처리기준)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한 업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시 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 결산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관련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인사 및 지침설정에 관한 사항 5. 채무부담 발생 원인행위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운영에 영향을 주는 사항 <p>② 연구소 업무 전결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며, 필요시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규정명칭 변경</p>
<p>제7조(준용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공과대학교 제규정을 준용한다.</p>	<p>(제9조로 이동)</p>	
<p>제8조(시행세칙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 지침 등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p>	<p>제8조(시행세칙 등)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 등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p>	
	<p>제9조(준용기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공과대학교 제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세칙은 2013년 0월 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p>	